

열린사회포럼 세미나

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

April 25, 2024

이강구

World's Leading Think Tank **KDI**

CONTENT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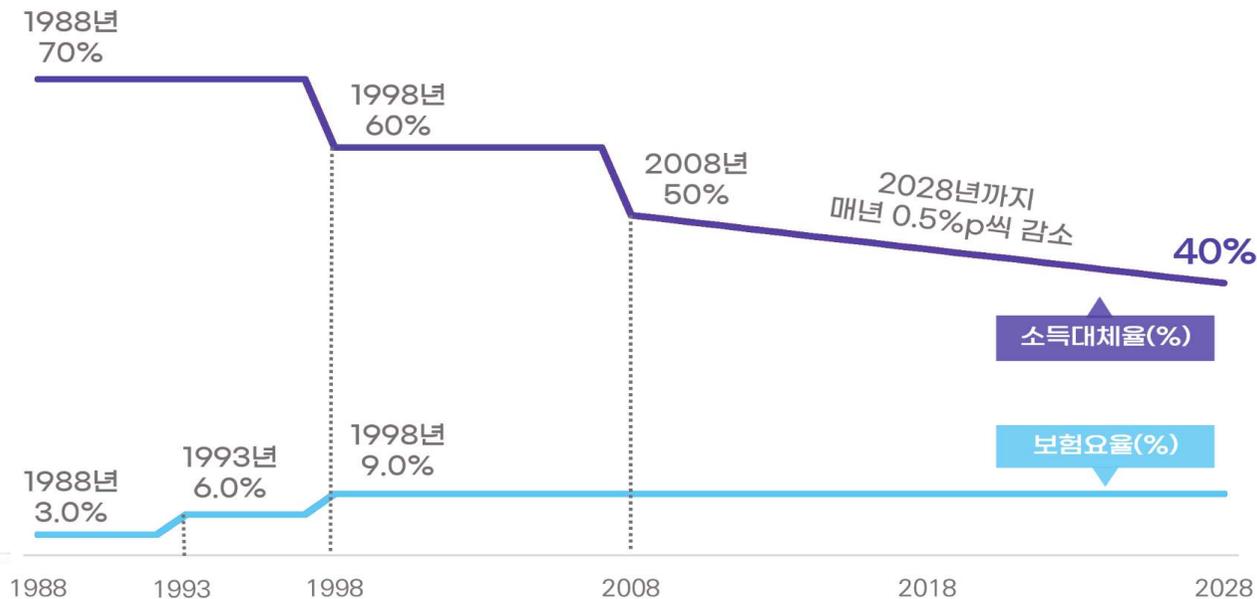
1.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
2. ‘기대수익비1’ 신연금제도 도입방안
3. 신연금제도 운용방안 제안

1 |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

KD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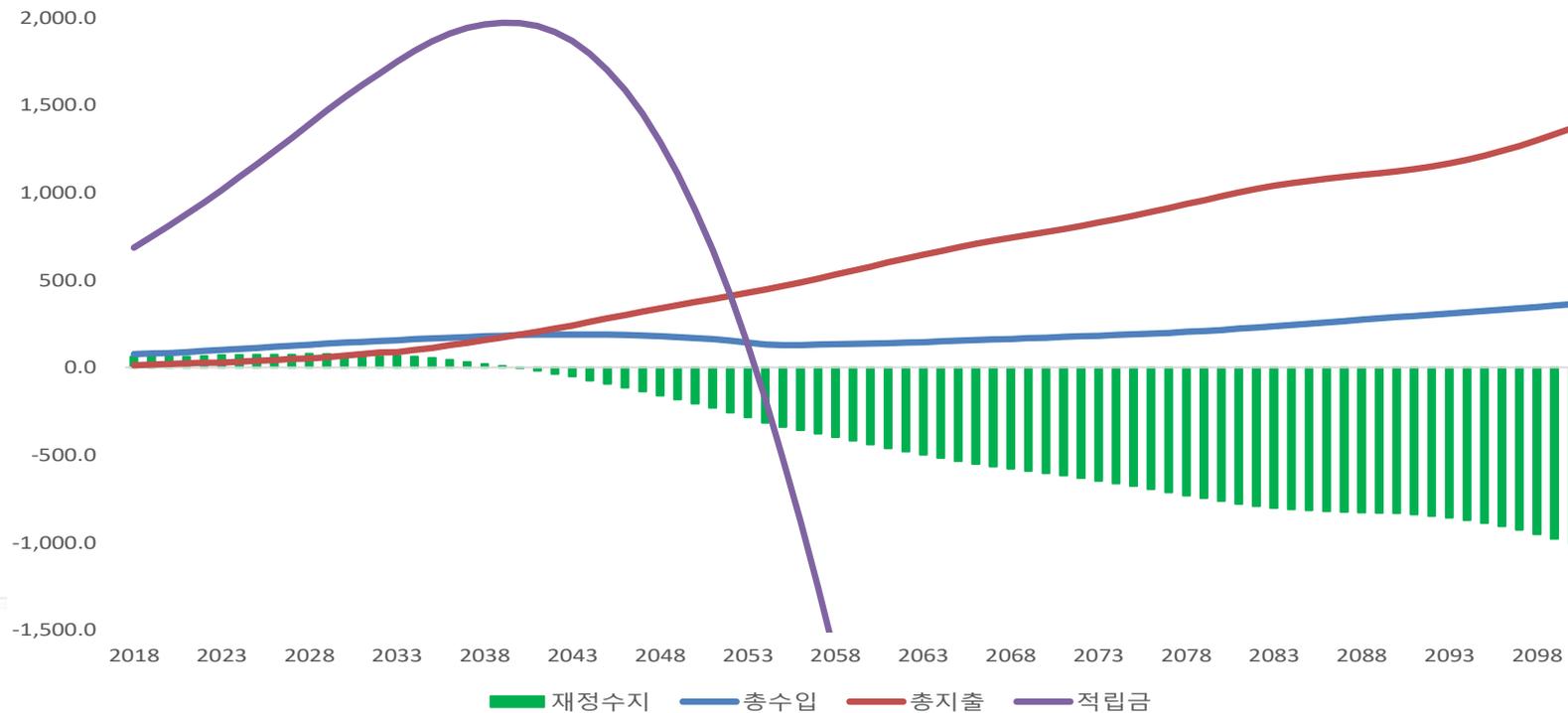
1-1.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

- ◆ 1988년 1월 국민연금 도입 이후 1998년 1차 국민연금 재정개혁 실시
 - 보험료율 3%와 기준 소득대체율 70%로 시작
 -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65세까지(33년까지) 상향
 - 2003년 1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2047년에 기금 소진
 - 2007년 2차 재정개혁에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



1-2.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

- ◆ 본 연구의 재정추계 결과 2054년 적립기금 소진이 전망됨.
 - 2023년 적립기금은 1,015.8조원(GDP의 44.8%)
 - 2039년 최대 규모인 1,972조원에 도달
 - 연금이 지속된다면, 2080년 GDP 대비 8.1%의 재정적자 총당 필요
 - 일반재정 지원이 없다면 보험료율을 34.9%로 올려야 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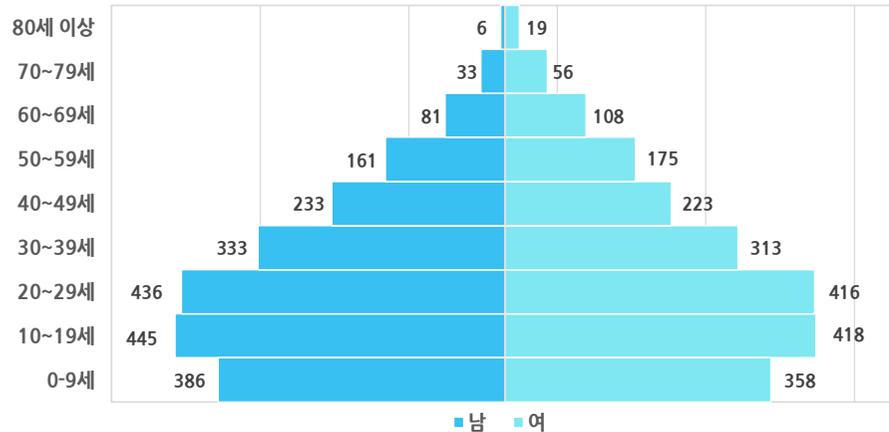
1-3. 현행 연금제도

- ◆ 본 연구는 구조개혁 없이 모수조정만으로는 기금소진시점을 이연시키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임.
 -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개혁방안은 대표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같은 모수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음.
- ◆ 연금제도 유형 구분
 - 재정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부과식과 적립식으로 구분
 - 부과식은 근로세대에서 부과되는 기여금 수입으로 은퇴자들의 연금지출을 지급하는 방식
 - 적립식은 납입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령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
 - 급여산정방식 기준으로 크게 확정급여(DB)형과 확정기여(DC형)으로 구분
 - DB형은 근로이력(근로소득이력, 가입기간 등)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
 - DC형은 납입한 보험료(+이자/수익, 은퇴 시 기대여명 등)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
 - 우리나라는 현재 부분적립+DB형: 적립기금 소진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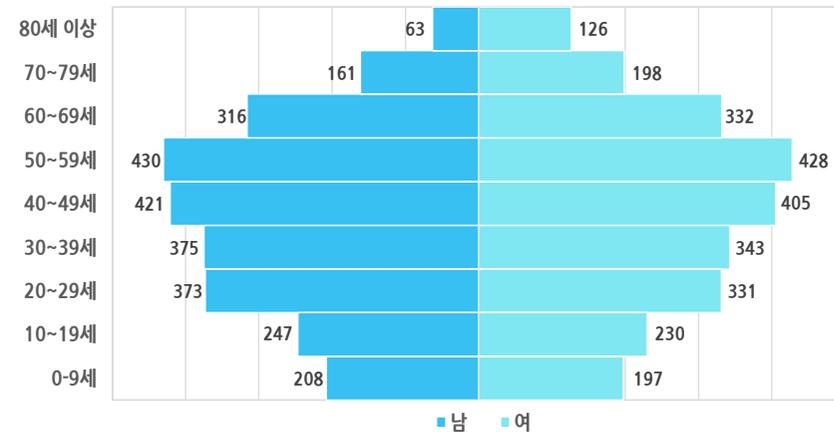
1-4.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

◆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상에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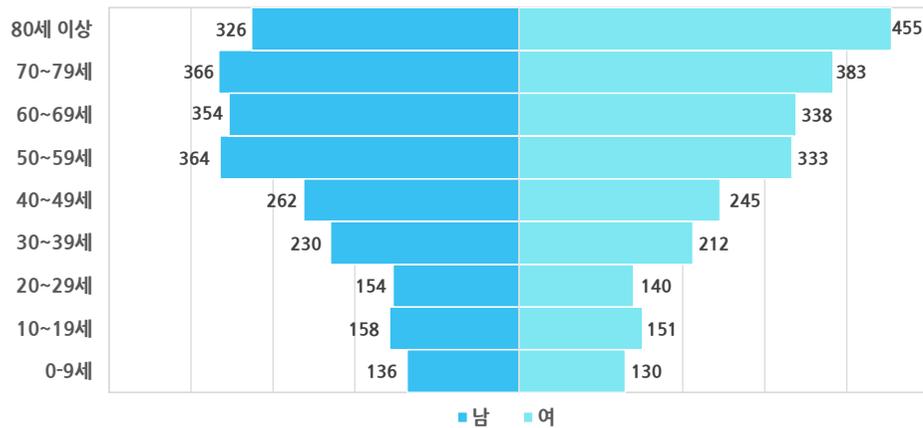
1988년(만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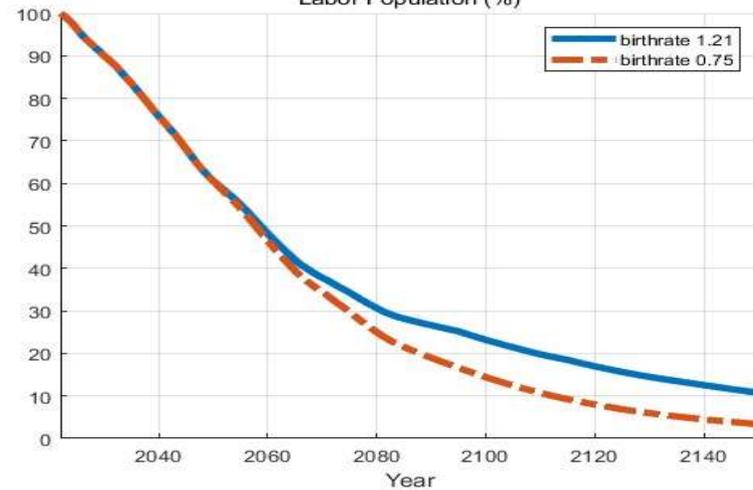
2020년(만명)



2050년(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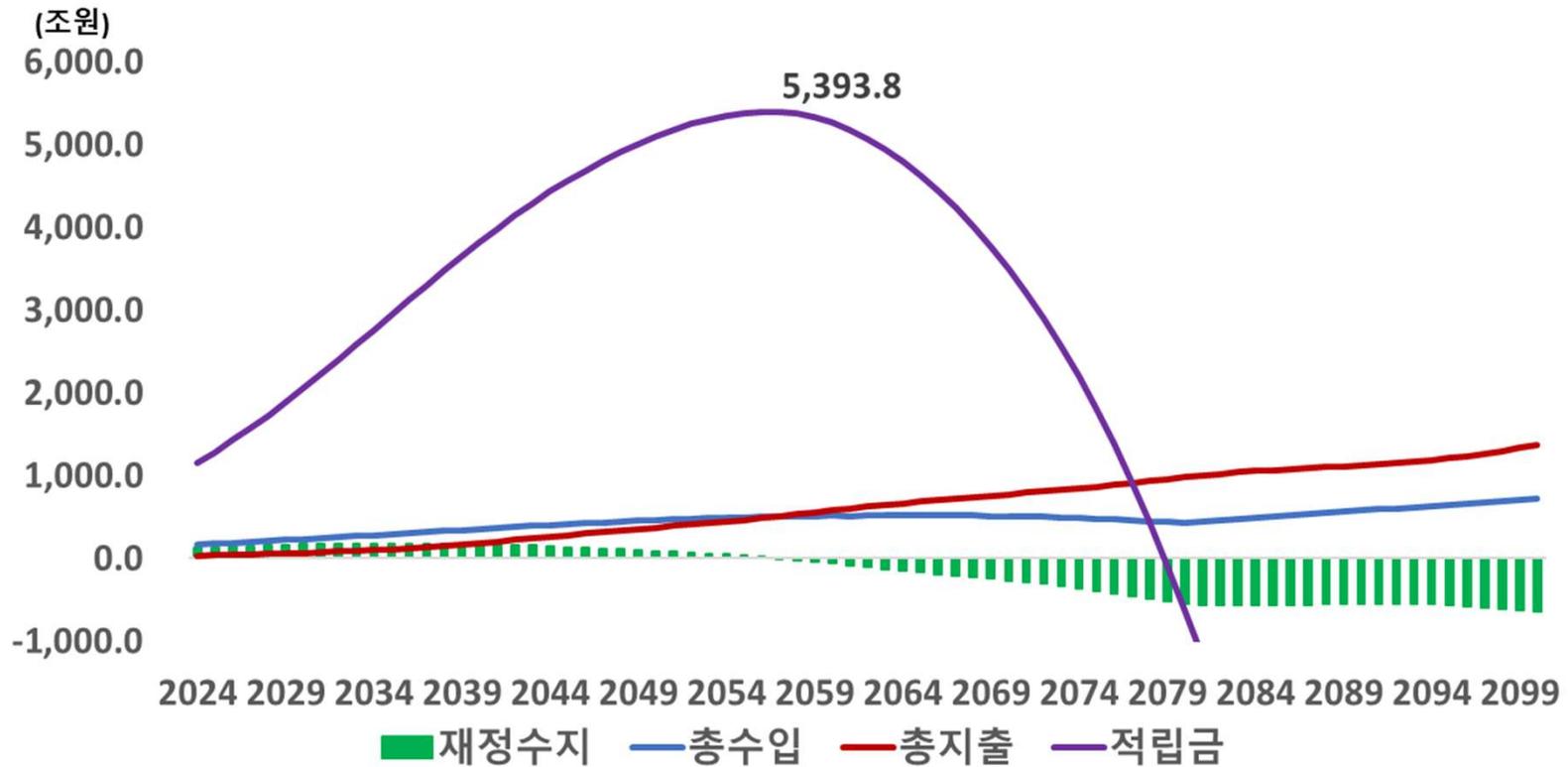


Labor Population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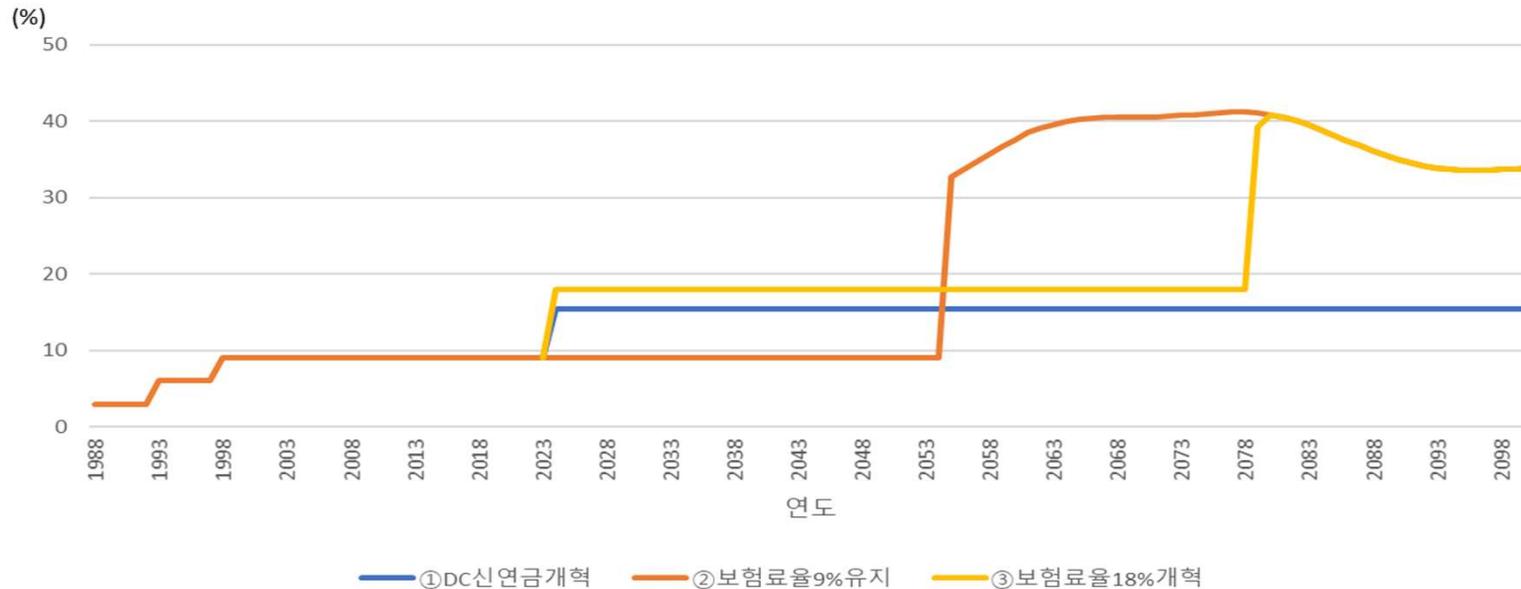
1-5. 보험료율 18% 인상?

◆ 현행에서 보험료율을 18%로 인상하여도 기금소진이 발생하며,
(보험료+수익) 대비 86% 뿐이 받을 수 없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생



1-6. 적립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율 변화

- ◆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이후 약속된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‘부과방식비용률’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.
- 9%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2050년대 중반 이후 30~40% 상승
- 18% 보험료율의 경우 2080년경부터 40~30%대로 상승해야 함.



2

**‘기대수익비1’
신연금제도 도입방안**

KDI

2-1. '기대수익비'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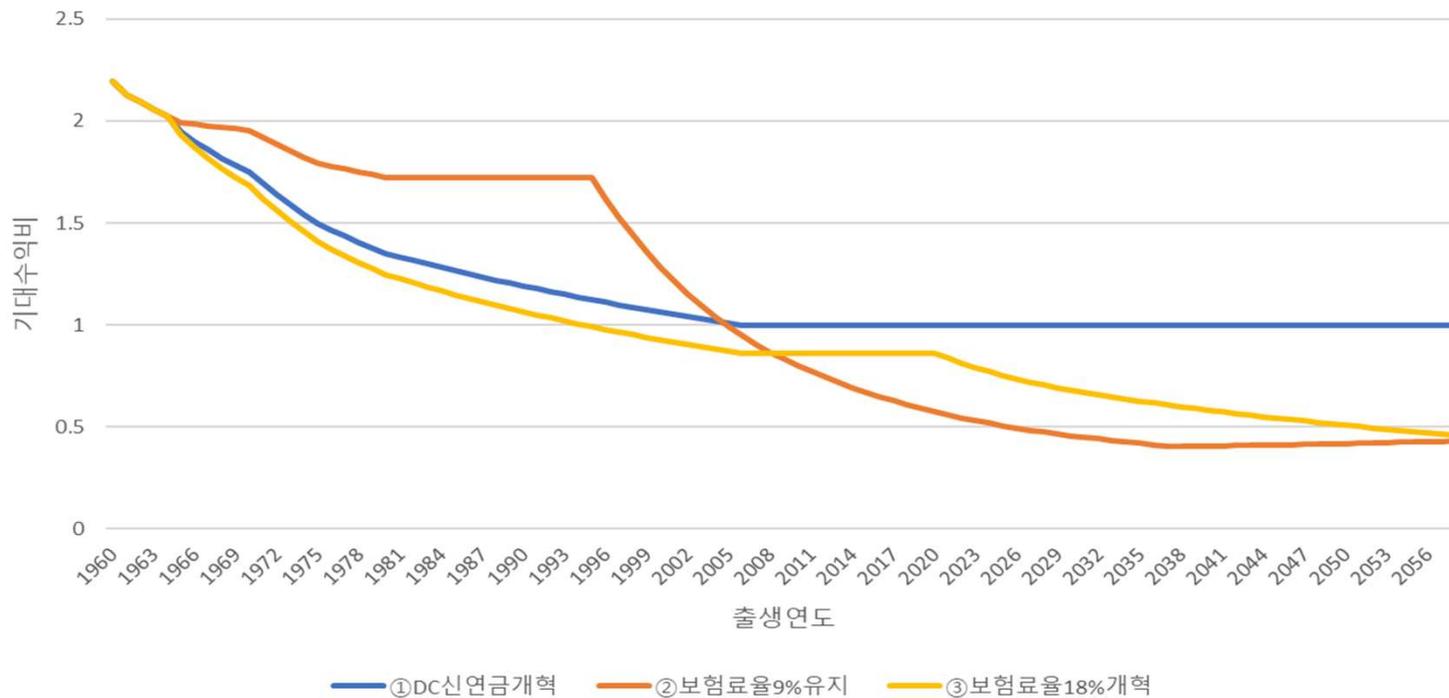
- ◆ 기대수익비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 수익의 합 대비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의 비율

$$\text{기대수익비} = \frac{\text{연금급여 총액}}{\text{보험료} + \text{기금운용수익}}$$

- 기대수익비 = 1 : 연금급여 = 보험료+운용수익
- 기대수익비 > 1 : 연금급여 > 보험료+운용수익
- 기대수익비 < 1 : 연금급여 < 보험료+운용수익

2-2. 출생연도별 기대수익비 비교

- ◆ 출생연도에 따라 적립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상승 부분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들은 기대수익비가 1을 초과하나 이후 세대들은 기대수익비가 1을 하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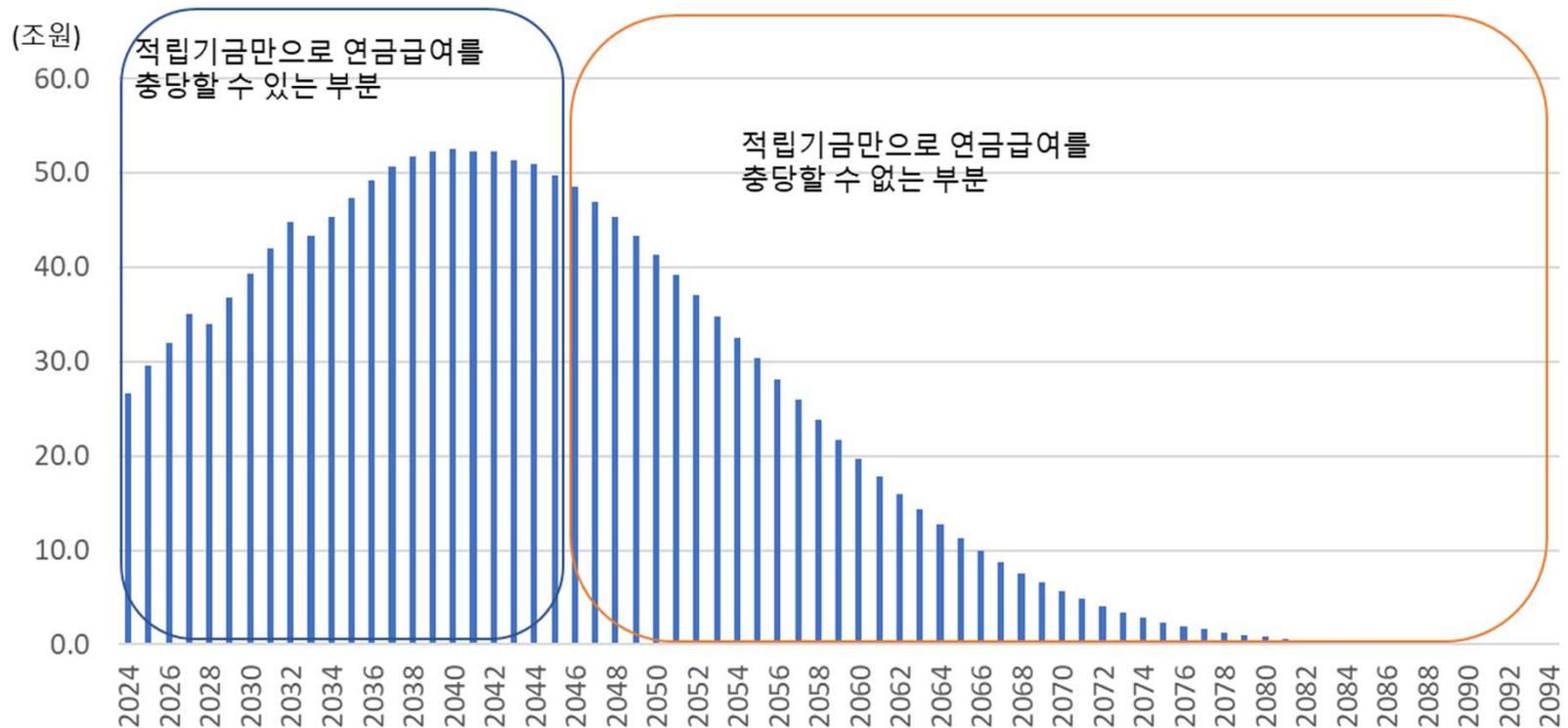


2-3. 기대수익비1의 신연금 도입방안

- ◆ 연금개혁시점을 기준으로 개혁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**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신연금**에 적립하여 운용하고, 개혁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개혁 이전에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산식에 따라 연금급여를 지급
-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기금고갈 걱정이 없는 것이 장점이며, 더 이상 기존세대가 더 받아가는 것에 대해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됨.
 - 재정부족분을 일반재정에서 부담한다면, 신연금에서는 보험료율 15.5%까지만 인상해도 현재 약속된 40%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

2-4. 구연금의 재정부족분

- ◆ ‘구연금’의 재정부족분은 2024년 기준 609조원(GDP의 26.9%)
 -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부담의 명목가치가 최소화 ⇒ 구연금 기금 소진 전 재정투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
 - 개혁 시점이 5년 지체되면 재정부족분 규모가 커져서 개혁이 더 어려워짐.
 - 2029년 기준 869조원(GDP의 38.4%)으로 +260조원 증가 전망



2-5. '기대수익비1' 신연금제도 도입방안

- ◆ 현행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'신연금'의 보험료율을 15.5% 이상으로 올려야 함.
- 국민 사이에서도 현재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존재
 -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기존 소득대체율을 50%로 올리는 방안
- '신연금'에서의 소득대체율 상승은 주로 보험료율 상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여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,
- 급여 수준이 변하지 않는 DB형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

3 | **신연금제도 운용방안 제안**

KDI

3-1. 신연금제도 운용방안 제안

- ◆ 구조개혁 없이는 영구적으로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란 불가능
 - 현행 확정급여(DB)형 연금제도에서 보험료율을 고정한 채로 기대수익비 1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중립(neutral) 기금 수익률, 기대여명, 경제성장률(임금상승률, 물가상승률) 등이 불변해야 하며
 - 이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전제되어야 하지만, 이는 불가능
 - 최용욱(2015)에 따르면 사망률 전망은 지속적으로 과대추정되고 있음.
 - 출생연도별로 보험료율을 상이하게 적용해야 함.(세대별로 기대여명 및 경제전망이 상이함) ⇒ 불가능
 - 무엇보다도 적립기금 고갈에 따라 연금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신뢰가 훼손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을 것

3-2. DB형 vs DC형

현행 국민연금 제도
확정급여형(DB)

노후에
받을
급여액 확정



연금 가입(20대)

4~50년



연금 수급(60대)

???년



수급 종료(사망)

신연금 제도
확정기여형(DC)

노후에
받을
급여액 확정



연금 가입(20대)

4~50년



연금 수급(60대)

기대여명,
운용수익등을
고려해 계산



수급 종료(사망)

3-3. DC형 신연금제도의 불확실성 보완방안

- ◆ 코호트 은퇴시점에 실질 연금 급여 흐름을 확정하면, 현행과 같이 기금수익률 하락, 물가상승률 상승, 사망률 하락으로 재정이 불안정 가능
- (해결방안1) 코호트 적립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인 연금급여 흐름을 재계산함.
 - 경제 및 인구 충격으로 인하여 실질 연금이 매우 낮아질 수 있으므로, 이에 대비하여 기초 연금을 재정비할 필요
- (해결방안2) 실제 기금수익률보다 더 낮은 가상수익률을 제시하고, 기금수익률의 초과분은 완충 계좌에 적립하여 충격에 대비
 - 완충 계좌가 소진되면 급여를 줄이고, 너무 많이 적립되면 급여를 올리는 방식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탑재

3-4. 신연금제도의 공적연금 역할

- ◆ 공적연금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적립방식 중 세대별 계좌제(CCDC; Cohort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) 연금 제도를 제안
 - 각 연령군(코호트) 구성원은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이 계좌에 적립 및 투자됨.
 - 개인계좌제와 다른 점은, 사망자의 가상계좌 적립액이 동일 코호트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됨.
 - 기대여명 평균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기대여명 평균보다 늦게 사망하는 사람에게 소득 이전을 할 수 있게 되어, 생존자의 평균 연금 급여를 개인계좌제보다 더 높일 수 있음.
- ◆ 세대별 계좌제 DC 연금 제도는 현행 연금제도와 같은 소득재분배 가능
 - (현행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비슷하게) 각 코호트 그룹으로 구분하고, 개인 급여와 소속 그룹 평균 급여에 가중치를 부여

KDI KDI

World's Leading Think Tank **KDI**